

1. 개정이유

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을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주택법」이 개정(법률 제16811호, 2019. 12. 10. 공포)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제출서류 및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자료의 공개(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

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서류 및 자료에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, 등록사업자의 선정 및 변경 등을 포함하고 매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1) 입법예고(2020. 0. 00. ~ 0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 1건(자료의 공개)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에 제3항 및 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 제12조제3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”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
2. 등록사업자의 선정 및 변경
3. 업무대행자의 선정 및 변경
4.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
5. 사업연도 말의 해당 토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의 확보 현황

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매년 2월말까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자료의 공개) ①·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11조(자료의 공개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법 제12조제3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자료”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</u> <u>2. 등록사업자의 선정 및 변경</u> <u>3. 업무대행자의 선정 및 변경</u> <u>4.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</u> <u>5. 사업연도 말의 해당 토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의 확보 현황</u> <u>④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제3항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매년 2월말까지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